

사설 강습권 이용약관

제1조(정의)

- ① “사설 강습권”이란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하이원 스키장 내 외부강사의 스키 및 스노우보드 강습허가를 증명하는 증서로, 시즌 사설 강습권과 당일 사설 강습권, 반일 사설 강습권(이하 당일 사설 강습권과 반일 사설 강습권을 총칭하여 “일일 사설 강습권”이라 합니다) 두 종류의 사설 강습권이 있습니다.
- ② “고객”이란 회사에서 발급한 사설 강습권을 적법하게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 ③ “부정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고객의 사설 강습권을 제3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하여 사용하는 행위
 2. 고객이 제3자에게 사설 강습권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 해당 제3자가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본인의 명의를 아닌 사설 강습권을 양도 또는 대여받아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는 행위
 4.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5. 위조되거나 변조된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는 행위
 6.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의 사설 강습권을 취득하는 행위
 7. 강습목적 외에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설 강습권을 사용하는 행위
 8. 상기사항 외 사회 통념상 기본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 일체

제2조(사설 강습권 유효기간, 사용제한 등)

- ① 시즌 사설 강습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다음 연도 1월말까지입니다. 단, 회사는 유효기간 이후라도 기상상황 및 회사의 영업사정에 따라 일정기간(유효기간 이후 제공되는 기간을 이하 “서비스 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당해 시즌 사설 강습권을 소지한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일일 사설 강습권은 일일 사설 강습권에 기재된 날(스키장 개장시부터 폐장시까지)에 한하여 기재된 시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효시간은 사설강습 자켓 및 밴드 수령시부터 반납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사설 강습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기상여건 의 악화로 안전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2. 입장객 초과

3. 안전문제로 인한 슬로프 정비
 4. 보강 제설
 5. 국내외 스키대회로 인한 슬로프 제한
 6. 기타 회사의 영업정책상 불가피한 사유
- ④ 모글, 하프파이프, 터레인파크 등 일반적으로 시설이 제한된 슬로프는 회사의 영업정책 및 슬로프 운영정책에 따라 강습진행을 제한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⑤ 고객은 강습생과 고객의 강습능력에 따라 적절한 슬로프를 이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슬로프 난이도에 따라 강습을 제한 및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 ⑥ 고객은 리프트/곤돌라를 우선 또는 우회 탑승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3조(서비스 기간 내 추가 서비스 제공)

- ① 회사는 시즌 사설 강습권 이용고객에게 각종 할인 혜택, 유효기간 연장 등의 추가 서비스(이하 “추가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지한 추가 서비스의 내용은 사전 통보 없이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하여 회사에게 추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거나, 변경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사설 강습권 구매조건)

- ① 고객은 아래 중 하나의 스키/보드 강사 자격증 소지자 중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대한스키지도자연맹(레벨 1, 2, 3)
 2. 한국스키장경영협회(티칭 1, 2, 3)
 3. 국민체육진흥공단(생활체육지도자 1~2급)
- ② 고객은 고객(강사)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레저시설(스키/보드) 이용 중 상해 발생 시 혜택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은 사설강습권 구매 시 제1항의 스키/보드 강사 자격증, 제2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지역할인 적용 시)을 사설강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사설 강습권 이용방법)

- ① 고객은 사설 강습 진행시마다 스키/보드학교 접수처를 방문하여 사설강습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시즌 사설 강습권 및 당일 사설 강습권 이용 고객은 각 사설 강습권을 제시하여 유

효한 기간 내의 사용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설강습 접수처 담당자는 필요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 고객 및 강습생 인원수에 맞춰 사설 강습 자켓/밴드를 제공합니다.

- ② 고객은 사설강습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사설강습 자켓과 밴드를 수령하여 강습생과 강사 모두 착용한 후 회사가 지정한 슬로프에서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습 종료 시 고객과 강습생은 사설 강습 자켓/밴드를 스키/보드학교 접수처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강습생의 사설 강습 자켓/밴드 착용 및 미반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이며 강습생의 사유를 들어 약관 위반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③ 신청한 사용 시간이 도과하도록 사설 강습 자켓/밴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당일에 사설 강습자켓 및 밴드의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납시까지(또는 본조 제5항에 따른 분실신고 및 분실요금 납부시까지) 사설 강습 신청 및 사설 강습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특히 반일 사설 강습권을 소지한 고객이 당일 내 반납하였으나 유효시간(3시간)을 초과하여 지연 반납한 경우 반일 사설 강습권과 당일 사설 강습권 이용요금과의 차액 상당 금액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사설강습권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별도로 사설강습시마다 사설강습 신청을 하여야 하며, 스키/보드학교에 사설강습 신청 없이 강습을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사설강습권 구매 요금과는 별도의 당일 사설 강습권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⑤ 사설 강습 자켓/밴드 분실 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분실한 경우 스키학교 접수처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설 강습 자켓/밴드의 분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1. 분실요금 : 사설 강습 자켓/밴드(강사용) : 1개당 300,000원, 사설 강습 자켓/밴드(강습생용) 1개당 50,000원이며, 접수처에서 수령한 고객(강사)이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부 시 사설 강습 신청이 제한됩니다.
2. 사설 강습 자켓/밴드 분실 반납 기간은 분실일로부터 7일이며, 기간이 지난 이후 반납하여도 분실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사설 강습권 검표 및 단속 협조)

- ① 회사는 수시로 사설 강습권 검표 작업 및 단속을 진행 할 수 있고, 고객은 확인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가 지정하는 단속 및 검표원은 상황에 따라 고글, 마스크, 헬멧 등의 안전보호 장비 탈착(고객 및 고객의 강습생 포함)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안전보호 장비 탈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보호 장비를 탈착하지 않은 고객의 강습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지정하는 단속 및 검표원은 사설 강습권 사진으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설 강습권 사진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에 불응 시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매 강습일시마다 강습을 개시하기 전에 스키/보드학교 접수처에서 강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강습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강습은 불법강습으로 간주됩니다. 강습신청서 제출이 없이 강습을 진행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의 강습권을 별도의 환불조치 없이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사설 강습 이용규칙)

- ① 강습 인원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4명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5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강습은 금지됩니다.
- ② 고객은 강습 진행 시 강습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한 장소에서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설강습 시 고객 및 강습생은 안전장구류(헬멧, 보호대 등)를 착용해야 합니다.
 2. 고객은 사설강습 시 강습생에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 후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사설강습 시 강습생이 안전그물망 방향으로 강습대형을 갖추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4. 고객은 사설강습 진행 시 슬로프 이용고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5. 고객은 사설강습 시 강사 신분에 적합한 언행을 구사해야 하며, 욕설, 막말, 구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강습생의 스키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정하여 강습을 진행해야하며, 무리한 슬로프 선정으로 사고 발생 시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강습생에게 본인의 소속 및 성명, 강습내용 등을 설명 후 강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④ 고객은 강습 진행 시 강습생에게 본인이 하이원리조트 소속된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이며, 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습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은 미성년자 강습 시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받아야 하고, 강습 종료 후 보호자에게 직접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 ⑥ 고객은 강습생 실력에 맞는 기술을 지도해야하며, 고객의 실력이 미치지 못한 강습 시 강습생에게 사실을 알리고 강습을 종료해야 합니다.
- ⑦ 사설 강습 중 음주, 흡연 행위나, 고객 또는 강습생의 취중 강습이 적발될 경우 고객은 사설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⑧ 강습진행 중 단속요원이 스키장 운영 및 안전을 위하여 이동 요청 시 고객은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미 협조 시 퇴장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강습제한)

- ① 사설 강습권은 이를 발급받은 고객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
- ② 고객은 스키장 내에서 강습을 진행 시 사설강습 자켓 및 밴드를 착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설 강습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1. 고객이 사설 강습자켓 및 밴드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단속요원 또는 검표요원의 확인 요청시에 사설 강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고객이 제시한 사설 강습권이 손상되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하는 경우
- ③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개장된 슬로프 또는 지정된 슬로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고객의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회사(하이원리조트) 소속이라는 거짓 정보 유포와 고객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시 사설강습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고객은 회사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고객은 회사의 시설 내에서 사설강습 모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적발될 경우 사설 강습권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⑥ 본 이용약관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사설 강습권 부정사용 및 제재)

- ① 고객은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하지 않아야하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부정사용을 한 자(고객 및 제2자)와 직간접적인 가담자는 회사의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사설 강습권은 회수 및 말소 처리됩니다.
- ③ 사설 강습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회수 및 말소 처리 시 회수 및 말소 처리된 강습권은 유효기간과 서비스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고객 또는 제3자가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당일 사설 강습권 종에 해당하는 정상 이용요금을 회사에 변상하여야 하며, 미 변상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사설 강습권을 부정사용한 고객 및 제3자는 차기 시즌부터 회사에서 판매하는 사설 강습권 및 스키패스권 구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사설 강습 중 사고발생 시 책임 소지)

- ① 고객은 강습 진행 시 강습생에게 본인이 하이원리조트 소속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이며, 강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회사가 아닌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강습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스키장 시설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강습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1조(사설 강습권 분실 및 처리)

- ① 사설 강습권이 유효기간 및 서비스기간 중 분실되거나 멸실, 훼손된 경우 고객은 즉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고,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배상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분실 신고된 사설 강습권의 재발급은 제13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12조(사설 강습자켓 및 사설강습 밴드 분실요금)

- ① 사설 강습자켓/밴드 분실 시 외스키학교 접수처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설 강습자켓/밴드의 분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1. 사설 강습자켓/밴드(강사용) 분실요금은 1개당 300,000원이며, 미납부 기간동안 사설 강습권 사용 및 구매가 정지 됩니다.
 - 2. 사설 강습자켓/밴드(강습생용) 분실요금은 1개당 50,000원이고, 접수처에서 사설 강습 자켓/밴드(강습생용)을 수령한 고객이 납부의 최종책임자이며, 미납부 시 미납부 기간 도안 사설 강습권 사용 및 구매가 정지 됩니다.
 - 3. 사설 강습자켓/밴드 분실 반납 기간은 분실일로부터 7일이며, 기간이 지난 이후 반납하여도 분실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고객(강사)이 2~3회 이상 사설 강습자켓/밴드를 상습적으로 분실 시 사설 강습권 사용에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강습권 재발급)

- ① 회사는 사설 강습권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설 강습권을 재발급 합니다.
- ② 회사는 사설 강습권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고객으로부터 고객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를 확인한 후 재발급 합니다. 다만, 고객은 강습권 카드의 원가를 포함한 발급관련 부대비용인 수수료 10,000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재발급 수수료는 분실에 따른 재발급 규정을 악용한 재판매, 대여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며, 분실된 사설 강습권을 다시 찾아 반납하더라도 기존에 지불한 재발급 비용 10,000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④ 분실 신고 접수 즉시 기존의 사설 강습권은 사용권한이 정지됩니다.

제14조(사설 강습권 환불 정책)

- ① 고객의 사정에 의한 강습권의 환불은 미사용 사설 강습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p><환불기준></p> <p>1. 시즌 사설 강습권</p> <p>회사는 고객의 사설강습권 구매금액으로부터 시즌개시일부터 환불일까지의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이용금액 기준이 되는 ‘구매금액’은 지역주민/렌탈샵 강습권이라 하더라도 일반 사설 강습권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할 계산의 기준이 되는 ‘총 기간’은 제2조 제1항의 시즌별 사설 강습권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습권 구매금액 - [위약금(강습권 구매금액의 10%)] - [(강습권 구매금액) × (시즌개시일로부터 환불 요청일까지 일 수/시즌개시일로부터 1월 31일까지의 일 수)]</p> <p>2. 당일 사설 강습권, 반일 사설 강습권</p> <p style="padding-left: 20px;">강습권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p> <p>※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사설강습용 자켓/밴드 수령 후 20분 내의 환불만 가능</p>

- ② 미사용 강습권의 차기 시즌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 ③ 사설 강습권 환불신청은 현장 데스크에서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서명 날인하여야 환불 접수가 완료되며 최종 사용일수는 신청 접수일 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④ 고객이 사설 강습권을 환불하는 경우 기발급된 사설 강습권은 반드시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⑤ 사설 강습권 환불은 결제자와 명의인이 다른 경우 결제자에게 환불이 진행됩니다.

제15조(양도·양수 정책)

- ① 고객은 시즌 사설 강습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1. 대상 : 고한사북지역주민레저협회(지역 렌탈 샵) 소속 시즌 사설 강습권 최초 구매자
 - 2. 횟수 : 1회에 한하여 가능함

3. 양도·양수 가능 기한

가. 미사용 : 구매일로부터 ~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

나. 사용 : 구매일 ~ 차기 연도 1월 31일 까지

4. 양수받은 고객은 재양도 불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설 강습권 및 지역주민 사설 강습권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설 강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전에 회사에 사설 강습권 양도에 관한 정보(양도 일자, 양수인에 관한 정보)를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통지된 바에 따라 양도인으로부터 기발급된 사설 강습권을 회수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사설 강습권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된 사설 강습권의 경우 별도의 양수수료가 없으나, 사용된 사설 강습권의 경우 구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양수인에게 부과됩니다.
- ④ 양수인은 회사의 사설 강습권 발급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 ⑤ 양도·양수된 사설 강습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16조 (사설 강습권 서비스 또는 약관 변경 승인)

회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서비스 또는 약관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공지하기로 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 (사설 강습권 분쟁의 해결 및 위반의 책임)

-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 ② 본 약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③ 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합니다.
- ④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1. 사설 강습권 발행
 - 2. 고객 본인 확인
 - 3. 고객 불만사항 처리, 연락
 - 4. 고객 만족도 조사

5. 스키장 이용 시 발생한 사건 사고 처리

6. 경품 등 발송 또는 배송업체 업무 위탁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회사의 지정된 담당자만이 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며, 등록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③ 고객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부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설 강습권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후, SMS, 전화, E-mail, 우편을 통하여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을 통해 회사의 영업정보 및 정책을 고객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① 고객은 사설 강습권 미소지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약관은 당해 사설 강습권 판매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본인은 하이원스키장 사설 강습권 이용약관의 각 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